#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이종배의원·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05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이종배·정태호·김종민

김정재 • 권칠승 • 조배숙

맹성규 • 김성원 • 허성무

안호영 · 김용태 · 김소희

박덕흠 • 이양수 • 이정문

황명선 · 서천호 · 송석준

한준호 • 강승규 • 엄태영

진종오 • 유상범 • 이종욱

의원(24인)

###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수소 사업 진·출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수소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소 에너지원의 본격 적인 활용에 앞서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 한 수소 사업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기 존 '진흥' 목적의 수소법과는 달리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 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사업, 수소·수소화합물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등록 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인수기 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료 등이용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바. 일정한 수소사업자에게 매년 5개년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도록 하며, 정부는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함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사.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 령,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정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의 통보 등을 규 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자.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 사재기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허가 취소·영업 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차.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 (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소"란 발전용, 수송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액화, 고체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수소화합물"이란 암모니아 등 수소와 다른 물질이 합성된 화합물 중 수소의 운송, 저장 및 발전 연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저장 또는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배관 등을 제외한 것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 나.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引受基地)업: 수소・수소화합물을 하역, 인수, 저장 및 공급 등을 하기 위한 설비 및 그 부대설비 가 집합적으로 설치된 기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것(이하"인수기지"라 한다) 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 다.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 수소 원료물질 또는 수소화합물로 부터 제조, 정제, 액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으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제조등(석유제품 제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
- 라.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수출하 거나 수입하는 사업
- 마.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등을 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판매 또는 운송하는 사업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바.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 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 하여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

- 4.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소 ·수소화합물 배관업을 하는 자
  - 나.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하는 자
  - 다.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소 ·수소화합물 제조업을 하는 자
  - 라.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 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을 하는 자
  - 마.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자: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판매 또는 운송업을 하는 자
  - 바.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자: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 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하는 자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및 수소·수소화합물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수소 · 수소화합물 사업

- 제4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의 허가) ① 수소·수소 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과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 2.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3. 수소·수소화합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또는 인수기지를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접근성, 주민수용성 및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등록) ①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⑥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의 등록) ①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의 종류와 그 취급 수소·수소화합물 및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항의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 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의 신고) ①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 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 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5.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제1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9조(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소 ·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 청"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 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 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법인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워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 ③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수

- 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 제1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그 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

다.

- 제12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시설기준 등 허가·등록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 5.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폐업한 경우
  - 6.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7.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자가 보세구역 밖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거래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 제25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3. 제3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 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징금)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수

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④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 수한다.
- ⑤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장 수소 · 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공동이용 등

- 제14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유지·관리 및 공동 이용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 기지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수소· 수소화합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적합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 시설 및 인수기지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시설능력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

- 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 또는 인수기지의 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배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가 인수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배관시설·인수

기지 구축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 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 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 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

-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15.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 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 가등에 관한 협의
-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허가
- 2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특례)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
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발전용 연료로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배관시설·인수기
지 구축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본다.

-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는 「전원개발촉 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인수기지 구축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

제19조(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①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 ·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이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제출

- 의무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수소· 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소· 수소화합물 공급계획 제출의무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 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0조(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수소·수소 화합물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이하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이 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수소・수소화합물의 수요량
  - 2. 수소・수소화합물의 생산량 및 수출량・수입량
  - 3. 수소·수소화합물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 4.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소·수소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시책담당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비축시책담당기관의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 ①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 라 한다)는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

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을 비축하여야 한다.

- ②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는 수소·수소화합물 수급 사정이나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소·수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가 해외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직접 제조하여 수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제5장 수소거래소 등

- 제23조(수소거래소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수소 ·수소화합물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소(이하 "수소거래 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소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수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수소거래 소 개시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수소거래소 회원에 관한 사항
- 2.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수소·수소화합물의 현물 및 선물의 전자 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 래를 말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수소·수소화합물 거래대금 및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사항
- 4.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정보에 대한 취합·관리 및 기준지수 형성 ·공표에 관한 사항(대표 거래 수소·수소화합물의 품질 및 거래 방법 등에 대한 정의 등 기준지수 형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검 토를 포함한다)
- 5. 수소 · 수소화합물 거래의 감시에 관한 사항
- 6.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수소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수소·수소화합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수소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수소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소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소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수소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수소·수소화합물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수소·수소화합물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 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소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수소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⑧ 그 밖에 수소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수소거 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수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수소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수소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공급규정) ①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소·수소화합물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감독

- 제25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 수소화합물 배관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 수소·수소 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및 수소·수소화합 물 판매·운송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지도·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27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가격 안정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35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수소·수소화합물 시설, 용품, 용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 제28조(사고의 통보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3. 수소・수소화합물 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 4. 수소·수소화합물 시설이 손괴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 5.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 시설이 손괴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 이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고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 제29조(보험가입)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 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사용 사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토지사용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수소·수소 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 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1조(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수소·수소 화합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가 격 보고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수소화합물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 보고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 보고 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금지행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소·수소화합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수소화합물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수소화합물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5.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수소화합물을 사재기하는 행위
  -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기망하여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 7. 수소·수소화합물 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 8.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3.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유통전담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28조에

따라 사고의 통보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장 벌칙

- 제37조(벌칙)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시설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수소·수소화합물 사용자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수소·수소화합물을 누출시 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⑧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승낙 없이 그의 시설을 조작하여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⑨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8항의 형(刑)과 같다.
-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승낙 없이 그의 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 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영위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 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영위한 자

- 3.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을 영위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 수소·수소화합물 판매· 운송업을 영위한 자
  - 3. 제22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 4. 제27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5. 제3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 거나 폐업한 자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

물 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소·수소화합물 배 관시설 또는 인수기지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에 관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
- 7.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 8. 제25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27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

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7 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판매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자의 등록 또는 제조신고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